

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
(2008년 10월 16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청소과장 서근필)

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(2008. 10. 23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동의 요구내용

-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성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	비고 (임기)
계	6명				
위원(주민)	박수재	여	58.12.0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~2010.10.23
위원(주민)	한정순	여	53.03.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~2010.10.23
위원(시의원)	박동학	남	57.09.08	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69	~2010.10.23
위원(시의원)	신석철	남	60.12.10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	~2010.10.23
위원(전문가)	여운호	남	55.08.01	서울 양천 신정동 목동A 1026-1404	~2010.10.23
위원(전문가)	김미경	여	62.07.30	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948	~2010.10.23

□ 관계법규 참고사항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1명까지 위촉 할 수 있는데 더 증원을 할 수 없나?	○11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. 향후 검토하여 더 위촉하도록 하겠음.
○전문가 2명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연 임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율과 전문성은 있는지?	○회의 참석률은 매우 좋은 편이며 우리 시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대한 의견서를 반영
토록 조치

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의견서

의안번호	320	안건명	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	제147회 부천시의회 (임시회)
		연월일	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08. 10. 16)

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

-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(별표 2)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 규정 내에서 위원 1인을 추가 선정

-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을 함

2008. 10. 16.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

의 번	안 호	제320호
의 년 월 일	결 년 월 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(대장동 소각장)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(2008. 10. 23.)가 만료됨에 따라,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동의 요구내용

-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

구분	성명	성별	생년월일	주소	비고 (임기)
계	6명				
위원(주민)	박수재	여	58.12.07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6-15	~2010.10.23
위원(주민)	한정순	여	53.03.21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71-3	~2010.10.23
위원(시의원)	박동학	남	57.09.08	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69	~2010.10.23
위원(시의원)	신석철	남	60.12.10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	~2010.10.23
위원(전문가)	여운호	남	55.08.01	서울 양천 신정1동 목동A 1026-1404	~2010.10.23
위원(전문가)	김미경	여	62.07.30	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948	~2010.10.23

□ 관계법규 참고사항
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
-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

□ 관계법규 조문

法	施 行 令																
<p>第17條의2【지원협의체구성원의구성기준및기능 등】</p> <p>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<u>시·군·구의회의원,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</u>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<p>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【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】</p> <p>①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주민지원협의체”(이하 “지원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</p> <p>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,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/p> <p>[별표 2]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(제18조제1항관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원협의체의 정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매 립 시 설</th> <th colspan="2">폐 기 물 소 각 시 설</th> </tr> <tr> <th>구성면적</th> <th>정원</th> <th>처리규모</th> <th>정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만제곱미터이상</td> <td>21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이상</td> <td>15인 이내</td> </tr> <tr> <td>100만제곱미터미만</td> <td>15인 이내</td> <td>1일처리능력 300톤미만</td> <td>11인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2. 지원협의체의 위원 <p>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, 환경상 영향의 정도,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의회의원</p> <p>나.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서 선정한 읍·면·동별 주민대표</p> <p>다.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</p> <p>비 고 : 1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. 2.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, 주민대표 대신에 해당 시·군·구의회의원 각 4인과 시·군·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. 3.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·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이상으로 한다.</p>	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구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
폐 기 물 매 립 시 설		폐 기 물 소 각 시 설															
구성면적	정원	처리규모	정원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이상	21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이상	15인 이내														
100만제곱미터미만	15인 이내	1일처리능력 300톤미만	11인 이내														